

## 알아봅시다... 공무원 행동강령

###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sup>1)</sup>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와 아래와 같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 소속 기관<sup>1)</sup>의 범위는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을 의미함

### 도입배경

- ◆ 소속 기관 퇴직자의 로비전관여우 등으로 인한 특혜제공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빈발
- ◆ 전·현직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수단으로 활용한 부패통로 차단

**Tip**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은 그 자체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사적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

### 부당한 지시 관련 Q&A

#### 1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 인지?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행도 사전 신고대상인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 신고가 필 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 생활권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맛집 탐방)
- ② 이동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소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권역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 ③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 청탁금지법 Key Point

###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공사감리자 등)

-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인사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설계심의위원회, 공사감리자 등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규정 적용**(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은 미적용)
-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확인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교감 등)에게 상담 및 신고

#### 1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선생님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선생님과 학생·학부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도 어떠한 음식물, 선물 등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공직자가 아닌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처리 절차는?

☞ 공무수행사인인 학교운영위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고 위원회 소속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공무수행사인인 학교운영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탁 및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나요?

☞ 학교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공무 수행에서만 청탁 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 4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의 감리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 공사감리자는 법령(건축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 교육청 청렴행사 홍보



2019년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설명회 (2019.3.26.)



2019년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워크숍 (20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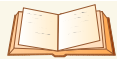
## 2018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 교무·학사 분야

####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 부적절

 주의

-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면서 2014학년도 8건, 2015학년도 50건 등 총 58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결석으로 봉사활동에 불참하였으나, 학교 학급 단위로 실시되었던 봉사활동에 대하여 1~4시간씩의 실적을 부여하여 입력함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부적절

 주의

- 2016학년도 2학년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조치사항 3호 및 6호를 받았음에도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도록 담임교사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않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부적절 및약품시약대장 관리 소홀

 주의

- 2016학년도에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안전점검표가 없으며, 2017학년도에 매월 실시해야 할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지 않았고, 2015학년도 이후 약품출납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음



■ 과학실험실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며, 연 2회 교육청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5~2018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등 과학교육 기본 계획」

## 인사, 복무 분야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 **경징계(건책)**

- 행정실 직원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2일(2016.4.14.~4.15.)간 소속 기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함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병가 초과 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절

✓ **주의, 회수 1,158,590원**

- 2015~2016년에 지방공무원 2명이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6일을 초과한 병가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총 1,158,590원을 과다 지급함



- 공무원은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단서 없는 연간 6일 초과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기간제교사 호봉 확정 부적절

✓ **주의, 회수 118,510원, 추가지급 732,510원**

- 기간제교사 ○○○ 및 □□□를 임용하면서 사서교사 ○○○은 정교사(2급)이고 사범대학 졸업자가 아니며, 전 경력이 없음에도 8호봉이 아닌 9호봉으로 호봉 확정 하였고, 영어교사 □□□는 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가산연수 1년을 더하지 않아 14호봉이 아닌 13호봉(경력포함)으로 호봉 확정하여 ○○○에게는 급여 118,51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에게는 732,510원을 과소 지급함



- 기간제교사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초임 호봉 시 기산호봉은 정교사(2급) 8호봉, 정교사(1급) 9호봉, 사범계 학과 졸업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유·초·중등(특수)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공무원보수규정」

■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